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18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김정재·박성민·이헌승

서일준 · 이달희 · 박충권

김기현 • 윤영석 • 유영하

박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 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 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 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 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 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런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 5 및 제67조제6호의2).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63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64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대폐차에 관한 사항,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종전의 제47조의4)의 제목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

안대책)"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시스템"으로 한다.

제67조제6호의2 중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제47조의5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 중 "제47조의5"를 "제47조의6"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중 "제47조의6"을 "제47조의7"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관련 정 |
| | 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 |
| | 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을 효율 |
| |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 |
| | 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
| |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
| | 있다. |
| | ② 제63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 |
| | 를 위임받은 자와 제64조에 따 |
| | 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
| |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
| | 에 관한 사항, 대폐차에 관한 사 |
| | 항,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 |
| | 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
| |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 | 를 활용하는 사항 등 국토교통 |
| |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합관 |
| | 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 |
| | 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 |
| |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
| |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
| | <u>수 있다</u> |
| | 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 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u>제47조의5</u>·<u>제47조의6</u>(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은 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

|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
| 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 |
| 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 |
| 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
|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 |
| 송실적관리시스템등"이라 한 |
| 다)의 관리자는 시스템 |
| |
| |
| |
| 제47조의 <u>6</u> ㆍ <u>제47조의7</u> (현행 제47 |
| 조의5 및 제47조의6과 같음) |
| 제67조(벌칙)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
| 6의2. <u>제47조의5에 따른 화물운</u> |
| 6의2. <u>제47조의5에 따른 화물운</u> <u>송실적관리시스템등</u> |
| |
| |
| |
| |
| |

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 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 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생략)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9. (생 략)
- 20. 21. 삭 제
- 21의2. <u>제47조의6</u>에 따른 화물 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 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 료제출 등을 한 자
- 22. ~ 27. (생략)
- ③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1. ~ 19. (현행과 같음) |
| 21의2. <u>제47조의7</u> |
| |
| |
| |
| |
| 22. ~ 27. (현행과 같음) |
| ③ (현행과 같음) |